

수 신 전 사업장  
 참 조  
 제 목 2021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거, 2021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
- 다 음 -

1. **관련근거**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,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


2. **건강검진 실시 내용**

가.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검진이 불가한 관계로 협약병원을 선정하지 않음  
 나. 사업장별 상세 내용

구 분	파견·금융보안	본 사
1. 대상자	2021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	
2. 검진주기	1년	2년
3. 검진장소	방문검진 (대상자 개별 방문) ※ <b>사전예약 필수</b>	
4. 검진일정	2021.12.31.까지	
5. 안내사항	① 검진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미수검시 <b>“과태료 부과”</b> <b>(1차위반 : 10만원, 2차위반 : 20만원, 3차 이상 위반 : 30만원)</b> ② 당해연도는 협약병원이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기관에서 검진 (홈페이지 <a href="http://hi.nhis.or.kr">hi.nhis.or.kr</a> > 건강IN > 검진기관 찾기) ※ <b>사전예약 및 (붙임2) 양식 작성 필수</b> ③ 담당자*는 건강검진 대상자 리스트(붙임1) 참고하여 대상자들에게 통보 후 방문검진을 진행하도록 협조 요망 ④ 연말에는 검진이 몰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요망	
6. 주의사항	① 건강검진의 주기를 1회를 초과하여 검진한 경우 검진비용을 수검자로부터 환수 ② <b>“의료급여대상자”</b> 는 사업장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관할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혹은 보건소에 직접 문의 (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) ③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발송하는 검진결과통보서or검진소견서는 추후 공단자료를 통해 수검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관할 것	

사업장별 담당자\* - 파견·금융보안 : 본사 관리자(파견팀·금융보안팀)  
 - 본 사 : 경영지원팀

- 붙 임 1.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리스트 1부  
 2.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(검진기관제시용) 양식 1부  
 3.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안내 공문 1부. 끝.

경 영 지 원 팀 장 

팀장 박성모

시행 고려2021 - 경영지원039 (2021. 10. 08.) 접수 ( )

(우)06607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12층 / <http://www.koryohumans.co.kr>

전화 02-3450-9533 / FAX 02-3450-9540 / E-mail : [smpark@koryohumans.co.kr](mailto:smpark@koryohumans.co.kr)